◎ OECD - BEPS Action 5에 관한 2021-2025 상호 검토 절차 발표

■ **2021년 2월 OECD/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(Inclusive Framework)는 Action 5(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)의 투명성 체계(Transparency Framework)에 관한 상호 검토 절차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을 발표함[1)]**

○ Action 5는 BEPS프로젝트의 15개 Action 중에서 BEPS 참여국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임[2)]

- 최소 기준은 적시에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검토를 수행함

○ Action 5의 투명성 체계는 BEPS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납세자별 판결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요구함

○ 해당 상호 검토 절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됨

■ **상호 검토 절차는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유해조세포럼(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: FHTP)에 의해 수행됨**

○ 평가 기준은 정보수집 절차, 정보 교환, 정보 비밀 유지, 통계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며, 방법론은 관련 자료 수집 절차, 보고서 준비 및 승인, 수정 및 해석, 검토 보고서의 기밀성 유지 등을 포함함

■ **평가 기준의 정보수집 절차와 관련하여, 관할권은 조세 예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범주 및 각 범주의 조세예규에 관한 식별이 필요함**

○ 관할권은 BEPS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래의 범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

1) OECD, "OECD agrees new peer review process to foster transparency on tax rulings", http://www.oecd.org/tax/beps/oecd-agrees-new-peer-review-process-to-foster-transparency-on-tax-rulings.htm, 검색일자: 2021. 3. 23.; OECD, Action 5 Harmful tax practices, http://www.oecd.org/tax/beps/beps-actions/action5/, 검색일자: 2021. 3. 23.; EY, "OECD releases new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5 for 2021 through 2025", https://globaltaxnews.ey.com/news/2021-5238-oecd-releases-new-transparency-framework-for-action-5-for-2021-through-2025, 검색일자: 2021. 3. 22.

2) 그 외 최소 기준으로는 Action 6(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), Action 13(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), Action 14(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)가 있음.

해야 함

- 특정 조세우대제도에 관한 예규
- 이전가격에 관한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(APA) 또는 역외거래에 대한 예규
- 과세이익을 하향 조정시키는 국제거래에 관한 예규
- 고정사업장에 관한 예규
- 특수관계인 및 도관에 관한 예규

○ 관할권은 각 범주의 과거/미래 예규을 식별해야 하며, 과거/미래 예규의 정의는 관할권에 따라 다름

- 관할권은 OECD/G20 국가, BEPS 포괄적 이행체계 신규 가입국가, 개발도상국가 등으로 구분됨

■ **평가 기준의 정보 교환 요소와 관련하여, 관할권은 투명성 체계 범주 내의 조세예규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하며, 아래의 항목이 요구됨**

○ 정보의 자발적 교환 및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국내 법적 체계를 보유함

○ 예규에 관한 정보가 과도한 지연 없이 국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에 전달되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설치함

○ 과거 예규에 관하여 가능한 빠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

○ 미래 예규에 관하여 관할 당국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변정윤 연구원>